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000. 2.19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9년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20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2월 18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위원수를 12인에서 8인으로 함 (제5조 제2항)
-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함 (제5조 제3항)
- 기금운용관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사회복지과장을 재활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함 (제11조 제1항)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동윤)

-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규조문대비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12인”을 “8인”으로하고, 동조 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복지환경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1목을 삭제하고, “2목”을 “1목”으로 “3목”을 “2목”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재활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 구성) ①(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2.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3.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p> <p>④ (생략)</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삭제)</p> <p>1.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금 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p> <p>② ~③ (생략)</p>	<p>제11조(기금 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할복지담당 사무관으로 한다.</p> <p>② ~③ (현행과 같음)</p>